

05-1-179630

주 의 사 항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주소와 취업중인 사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 되며,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정지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76247403703W

성 명 김문호

자격종목 2130

화학류관리산업기사

년월일 1946. 03.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1-6 N-SUITE
101동 401호

적면월일 1968 년07 월26
부면월일 2005 년08 월30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정의 직인 및 철인(전공)이 없는 것은 무효임.



원본대조필